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대통령령 제28805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지연 제출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이유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금전납부의무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3조제1항	
가. 지연 제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만원
나. 지연 제출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60만원
다. 지연 제출 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120만원
라. 기한이 지난 후 12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그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지연하여 제출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 무 총 리 이 낙 언

국 무 위 원
국 토 교 통 부 장 김 현 미

●대통령령 제2880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21조”를 “법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사업인정신청서”를 “사업인정신청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인가·승인 등 신청서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인가·승인권자 등”으로 한다.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부수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부수사업의 원인이 되는 법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사업”이라 한다)의 이주대책에 부수사업의 이주대책을 포함하여 수립·실시하여 줄 것을 주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수사업 이주대책 대상자의 이주대책을 위한 비용은 부수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부수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주된사업의 이주대책 수립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것